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가스열위원회 및 전기가스열감독원 설립〉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21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요	4
2. 조문별 검토	7
가.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안 제10조의2 신설) 등	7
나. 전기가스열감독원 설립(안 제13조의2 신설 등)	23
다. 에너지사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국가의 책무(안 제4조제6항 신설) ·	29
※ 참고자료: 전기위원회 개요	32

I. 제안경위

2025년 1월 24일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에너지 시장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감독,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한 재정(裁定)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7까지 신설).
- 나. 전기·도시가스·열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1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요

현재는 「에너지법」에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가스·열(집단에너지¹⁾) 등 대표적인 에너지원에 대해 각각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에너지원별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인허가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등 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와 집단에너지사업의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시가스사업의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다만, 최근 들어 전기·가스·열 간의 시장 연계성이 심화되고, 특히 전력시장에서 LNG 발전의 비중이 커지면서 도시가스 요금과 전력 도매가격 간 연동성이 확대되는 등 에너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개별 규제체계만으로는 종합적·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물가안정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원가 이하의 요금 체계와 공기업 재정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요금의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며, 전기·가스·열 에너지사업의

1)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뜻함(「집단에너지법」 참조).

인허가, 감독 및 분쟁 조정 등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할 독립 규제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그 소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함.

[개정안의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비고
제4조제6항	국가의 에너지사용자 권익보호, 분쟁 예방·조정 노력 의무	
제10조의2	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및 소관사무	전기가스 위원회
제10조의3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0조의4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裁定)	
제10조의5	전기가스열위원회 지도·감독	
제10조의6부터 제10조의17까지	위원회 구성, 위원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겸직근무, 결격사유,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사 및 의견청취, 전문위원회, 사무처 설치, 조직에 대한 규정 등	
제13조의2	전기가스열감독원의 설립	전기가스열 감독원
제13조의6	전기가스열감독원 업무	
제13조의9	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13조의3부터 제13조의12까지 (제13조의6·제13 조의9 제외)	사무소, 정관, 임원, 예산, 비용부담, 비밀누설 금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민법」 준용	

참고로,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하고²⁾, 개정안이

2)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

의도하는 바와 같이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전기사업·가스사업·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행정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에너지법의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3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³⁾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소관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3) 이상의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함.

2. 조문별 검토

가. 전기가스열위원회 설립(안 제10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감독, 주요 인허가 사항의 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한 재정(裁定)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는 기존에 에너지원별 개별 법률인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가스사업·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전기사업 등과 관련한 분쟁의 재정은 전기위원회)이 담당해온 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일원화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대해서는 ①산업통상부장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지, ②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진 에너지 사업의 정책 결정을 하나의 기관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정부는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합적·합리적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전기·가스·열 수급안정화와 국민 공익보호 및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감독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 감시 및 국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정명령 3. 에너지 산업별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5.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3(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기가스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나.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다.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

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라.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인가에 관한 사항

마.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
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바.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사.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
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아.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
수에 관한 사항

차.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카.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타.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파.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하.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
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거. 제47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너.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
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
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다. 제10조의9제2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
연가스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

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마.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바. 제24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사.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아.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자.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 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차. 제40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 합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나.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사항

라.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마.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바.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사.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

아.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등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 한 사항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가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

<신 설>

다.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

제10조의4(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등 공급자와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약관·규정에 관한 사항
 3. 「전기사업법」 제7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용 요금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6.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7. 「전기사업법」 제90조 및 제90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8.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열생산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간 조정에 관한 사항
 10.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1.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5(전기가스열위원회 지도·감독) 전기가스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도·감독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감독원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

<신 설>

제10조의6(전기가스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민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전기·가스·열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0조의16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신 설>

제10조의7(위원장) ① 위원장은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대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8(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신 설>

제10조의9(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 설>	<u>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u> <u>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u>
	<u>제10조의10(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 <u>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u> <u>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u>제10조의11(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u> <u>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u> <u>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u> <u>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u> <u>5. 제1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제10조의5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u>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u> <u>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제10조의5 각 호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제10조의12(회의)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u>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u> <u>④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가스열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1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14(조사 및 의견청취)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u>기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관련사업 등의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u> <u>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u> <u>3. 현지조사</u>
<신 설>	<u>제10조의15(전문위원회)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u>제10조의16(사무처의 설치)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u>
<신 설>	<u>제10조의17(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1) 전기가스열위원회로의 권한 이전에 대한 적절성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은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독임제 행정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과 합의제 행정청(위원회 등)으로 구분되며, 독임제 행정청은 1인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반면, 합의제 행정청은 다수 위원이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

합의제 행정청은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의사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대표적인 합의제 행정청 사례임.

개정안은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독임으로 수행하던 전기·열에너지 및 가스 관련 정책과 인허가 사항을 합의제 행정청인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관하여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업무]

조항	업무내용
소관사무 (제10조의3 제1항)	1. 수급안정화와 국민 공익보호 및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감독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 감시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정명령 3. 에너지 산업별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5.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6. 그 밖에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심의·의결 (제10조의3)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업무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업무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업무 4. 전기사업등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지도·감독 (제10조의5)	전기가스열감독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안에 따른 전기가스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안 제10조의3)]

구분	심의·의결사항
전기 사업법	▪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 부과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 ▪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 ▪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 ▪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과징금의 부과·징수 ▪ 전력수급기본계획 ▪ 전력거래가격의 상한, 차액계약의 인가 ▪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 ▪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 ▪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도시 가스 사업법	▪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스 수입의 제한 ▪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 ▪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 ▪ 가스도매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행위 중지 명령 ▪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명령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 ▪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에 대한 명령
집단 에너지 사업법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원상회복 명령 ▪ 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업무방법 등의 개선 명령 ▪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
기타	▪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업 등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 ▪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보호 ▪ 다른 법령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및 산업부 장관,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이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개정안과 같이 에너지공급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기·가스·열에너지사업의 허가·신고,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주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기가스열위원회가 관장하게 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의 기존 업무에서 분리되어 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민간 에너지 전문가를 포함시켜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이원적으로 수행하던 에너지 관련 업무를 위원회가 집중하여 수행함으로써 정책 간 정합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에너지사업 전반을 이관하는 경우 전기·가스·열 각각의 시장구조와 에너지 특성을 고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정책기능은 종전대로 각 부처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정책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지만,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전기위원회가 전기사업 허가, 공급약관의 인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쟁 재정도 담당하고 하고 있어⁴⁾ 기존 독임제 행정청의 단점을 일정 부분 보완하고 있음.

4) 「전기사업법」 제57조(전기위원회의 제정)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 사항]

조항	조문내용
제7조제2항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제15조제2항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
제16조제2항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제33조제2항	전력거래가격의 상한 고시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2)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분야별 정책 기능 통합의 적절성

개정안은 전기·가스·열에너지와 관련된 독립적 규제기관을 설치하면서 전기가스열위원회에 관련 권한을 통합하여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그런데, 주요 에너지원인 전기, 가스 및 집단에너지(열)는 에너지 자체의 특성과 판매 구조가 상이하며, 그로 인해 적합한 규제 방식과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에너지원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전기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입⁵⁾되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송전하는데 전력망 설치 여부에 따른 제약이 있으며⁶⁾ 전력 소매시장에서 판매자 지위를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음.

반면, 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여러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가스를 공급하면 개별 소매기업이 서로 다른 요금체계 아래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고, 거주시설의 난방이나 발전 원료로 주로 사용됨.

한편,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장은 민간 개방 시장으로 주로 난방용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운영되며,

5) 2025년 기준, 전체 전력판매량(5,494억 1,700만kWh) 중 산업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51.0% (2,802억 2,100만kWh)임.

6) 현재 송전망 건설 지연과 발전설비 출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소나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 등 주요 전력수요 지역에 보내지 못하는 송전제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열 생산 및 전송 시스템을 통한 열에너지의 소비자 제공이 주된 활동임.

이렇듯 에너지원에 따라 각각의 시장에서 공급(자) 및 수요(자) 메커니즘이 상이하고 일정 부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등의 특성을 지닌 전기·가스·열에너지에 대한 규제기관을 하나로 통일하면 에너지원별 특성에 부합하는 요금 결정과 적시에 적절한 시장 규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가스·열 각각의 시장구조, 경쟁정도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개별법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정비⁷⁾하고, 규제체계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7) • (전기) 민간 전력시장 참여 확대, 전력시장의 복잡성 증가, 전력 신산업 부상 등 환경변화 고려시,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독립적·전문적 전기요금 검증, 전력시장 감시 등 필요
• (가스·열) 각각의 시장구조 등을 고려하여 도시기사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규제체계 정비 추진

나. 전기가스열감독원 설립(안 제13조의2 신설 등)

개정안은 전기가스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12까지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2(전기가스열감독원의 설립) ① 전기·도시가스·열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u><신 설></u>	제13조의3(사무소) ①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u><신 설></u>	제13조의4(정관) 감독원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u><신설></u>	3. 재산에 관한 사항 4.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의5(임원) ① 감독원의 임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 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6(업무)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및 전기사업등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안전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3.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등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5. 전기사업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이 위탁한 사항 제13조의7(예산 등) ①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감독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할 수 있다.
<u><신설></u>	
<u><신설></u>	

현행	개정안
	② 감독원의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전기가스열위원회에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신설>	제13조의8(비용부담)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의9(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독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의10(비밀누설 등의 금지) 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13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독원이 아닌 자는 전기가스열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담기관</u>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략) <u><신설></u>	못한다. 제13조의12(「민법」의 준용) 전기가스열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u>산업통상자원부장관</u> 또는 <u>전기가스열위원회의</u>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담기관</u> 또는 <u>감독원</u>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1. 2. (현행과 같음) <u>3. 감독원의 임직원</u>

개정안은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사업에 관한 정책결정 및 집행업무에 관한 권한을 각 소관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이전하면서 전기·도시가스와 같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감독 등 전기가스열위원회에서 수행하게 되는 집행업무의 일부를 전기가스열감독원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임. 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

계와 유사한 구조로, 정책은 위원회가, 감독업무는 특수법인이 수행하는 형태임⁸⁾.

개정안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시장 감독에 관한 업무 등을 전기가스열감독원에 위탁한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에너지 시장을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경우 중 위원회에 속하는 사무조직⁹⁾이 아닌 특수법인인 집행기관을 별도로 설립한 사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계가 유일한 사례로서 이는 금융 시장의 복잡성 및 독립적인 감독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에너지 시장의 특수성이나 거래의 복잡성 등이 별도 집행기관의 설립이 필요한 정도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8) <금융정책 관련 수행체계>

구 분	주요 기능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 환율·외환시장 정책 • 국제수지·외환수급 • 국제금융 협력 • 외채·대외채권 관리 등
금융위원회	국내금융(감독)	•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 • 자본시장 관리·감독 •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 • 금융소비자 보호 • 금감원 지도·감독·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집행	•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재산상황 검사, 회계감리,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등)

자료: 행정안전부

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참조

또한, 전기가스열위원회-전기가스열감독원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결정과 감독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에너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위해 양 기관의 정보교환 및 협조체계가 제도적으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가스·열 각각의 시장구조, 경쟁 정도가 다를 것을 고려하여 개별법에서 우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 및 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전력시장 감시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 에너지사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국가의 책무(안 제4조제6항 신설)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로 에너지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에너지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신설하고자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국가는 에너지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에너지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현행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¹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사용자, 모든 국민 각각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¹¹⁾.

10) 「에너지법」의 제1조(목적)에 규정된 궁극적 목적임.

11)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전기사업의 경우 전기위원회에서 분쟁의 재정을 맡고 있고, 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의 경우 분쟁의 재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민원을 접수받아 필요시 도시가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분쟁 조정에 개입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에너지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에너지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 분쟁을 예방·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 조항은 개정안 제10조의4의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규정과 유사한 입법취지로 보이나,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설치여부와 별개로 국가 등의 책무에 추가함으로써 에너지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짐.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에너지사용자 권익 보호, 에너지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 분쟁 예방·조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바,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6

참고

전기위원회 개요

- (목적)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설치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1.4월 발족

주요기능

- ① 발전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 양수·분할·합병·주식취득 인가 등 심의
- ② 전기요금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 ③ 전력시장운영규칙 제·개정 심의
- ④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및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 ⑤ 전기사업자 간의 분쟁 재정(의결) 등

- (구성) 전기위원회(본회의), 3개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

• 전기위원회 (본회의)

- 구성 : 정원 9명(현원 8명, 위원장 포함)
* 비상임위원 정원 8명(현원 7명),
상임위원(에너지전환정책실장)
- 임기 : 3년(연임 가능)
- 임명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 위촉
- 회의 : 월 1회(둘째주 금요일, 서울)

• 전문위원회(3개)

- ① 법률·분쟁조정
- ② 전력계통 및 신뢰도
- ③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 구성 : 각 위원회별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임기 / 임명 : 2년 / 위원장이 위촉
- 기능 : 중요 안전 사전 검토·자문 등
- 회의 : 필요시

• 사무국 (정원 9, 현원 9명) (사무국장(3·4급) 1명, 사무관 6명, 주무관 2명)

- 기후부 소속기관
- 안전 예비검토 등 위원회 사무처리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